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AC820)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 02-3787-3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3.09.17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09.24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http://www.midasasset.com>
각 판매회사, 협회 → <http://www.kofia.or.kr>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합니다.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혼합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채권 및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형)입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거나 지수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Long-Short 전략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며 채권 모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투자비중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50% 이상 60%이하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거나 지수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Long-Short 전략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Long-Short 전략/ 자산배분전략/ 증권대여/ 차익거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Net Exposure) 수준을 20%이하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마이다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50% 미만
	투자목적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자산을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A- 이상 신용등급의 회사채와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두어 개별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제한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요 운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해당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되며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 매도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모펀드(마이다스 거북이 증권모투자신탁(주식))는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하여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Long-Short전략 등을 통하여 주식관련 위험노출 수준을 투자신탁 재산의 20% 이하 수준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 60%이하를 투자하는 이 집합투자기구는 5등급 중 2등급의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부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 산규모	
주식	허필석	1967	책임 운용역	11	3,717억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95.3월~98.12월 장기신용은행 -99.3월~99.8월 삼성증권 -99.9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식	채경섭	1974	부책임 운용역	5	83억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1.02월~02.03월 BSF Company Ltd -02.04월~05.09월 신영증권 -05.09월~06.05월 흥국투자신탁 -08.06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채권	오중록	1973	책임 운용역	9	1,691억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99.7월~01.5월 교보투자신탁운용 -01.6월~02.3월 아이투자신탁운용 -02.4월~03.10월 피데스투자자문 -05.8월~07.4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07.5월~08.4월 알리안츠생명 -08.5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가. 연도별 수익률

신규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이하	납입금액의 0.25%이하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1) 상기 선취수수료 부과 한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주 2) 수수료를 차등화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C-W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제한없음	온라인	WRAP 계좌보유	

		가입자		가입자	고객 및 특정금전 신탁고객 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450%	연 0.450%	연 0.450%	연 0.450%	연 0.45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450%	연 0.225%	연 0.850%	연 0.425%	연 0.000%	
신탁업자 보수	연 0.020%	연 0.020%	연 0.020%	연 0.020%	연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0%	연 0.020%	연 0.020%	연 0.020%	연 0.020%	
기타 비용	연 0.000%	연 0.000%	연 0.000%	연 0.000%	연 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0.940%	연 0.715%	연 1.340%	연 0.915%	연 0.495%	-
증권 거래비용	연 0.000%	연 0.000%	연 0.000%	연 0.000%	연 0.000%	사유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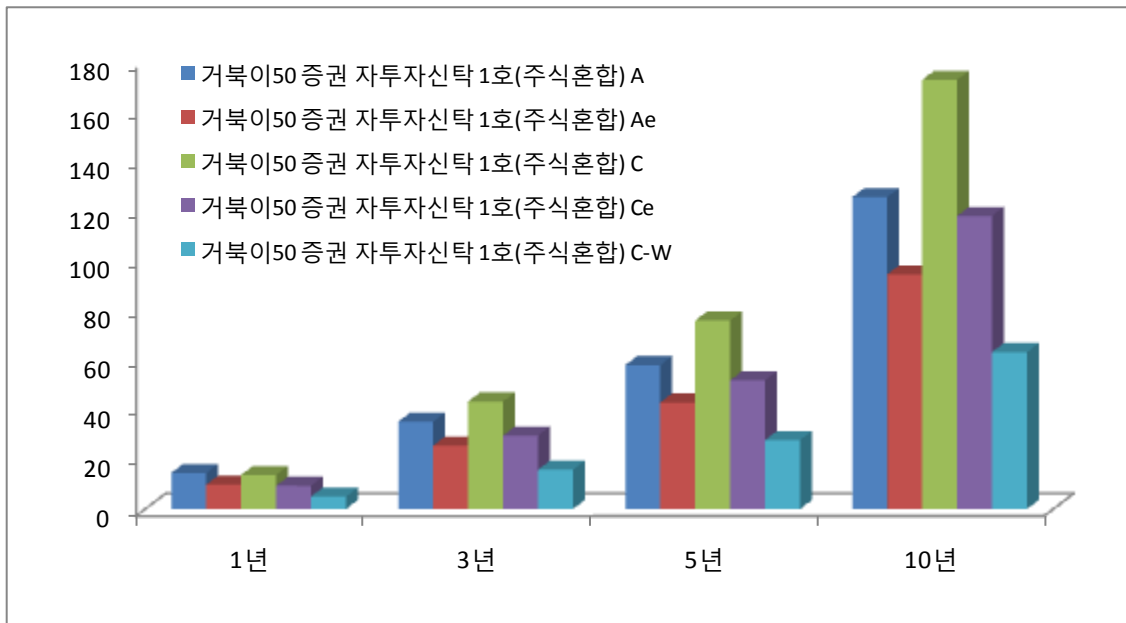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각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의 경우 설정 후 회계기간에 도달하지 않아 기재를 유예합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의 경우 설정 후 회계기간에 도달하지 않아 기재를 유예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만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종류 A	14.56	35.20	57.95	125.56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종류 Ae	9.80	25.54	42.89	94.44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종류 C	13.74	43.30	75.89	172.76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종류 Ce	9.38	29.57	51.82	117.96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종류 C-W	5.02	15.83	27.75	63.1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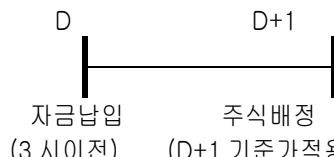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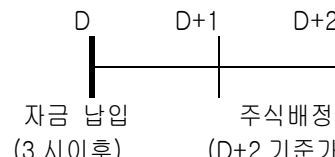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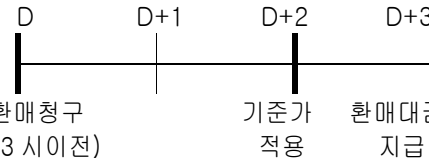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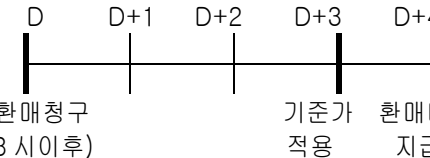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	----------	-----------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자금납입 (3 시이전) 주식배정 (D+1 기준가적용)</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p>자금 납입 (3 시이후) 주식배정 (D+2 기준가적용)</p>
환 매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p>환매청구 (3 시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p>	- 환매를 청구한 날 (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5 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  <p>환매청구 (3 시이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p>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요약 재무정보

- 신규 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